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 871호 2012. 2. 21(화)

◀ 규 칙 ▶

-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560호) 2

◀ 공 고 ▶

- 공 인 공 고 (제2012-258호) 9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제2012-259호) 12

회 람									
--------	--	--	--	--	--	--	--	--	--

규 칙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1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규칙 제 560호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를 “별표1의2의 음주운전징계기준 및 별표1의3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4와 별표 5” 를 “별표 4와 별표 1의2”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 제1항, 별표 1 및 별표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과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교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1의 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p> <p>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 가금 (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 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 행, 근무성적, 공적, 누우치는 정 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 표 1의 징계기준 및 <u>별표 1의2의</u> <u>징계부가금기준</u>에 따라 사건을 의 결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 략)</p>	<p>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p> <p>① ----- ----- ----- ----- ----- ----- ----- <u>별표 1의2의</u> <u>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u> <u>의 징계 부가금 기준</u>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 재요령)</p> <p>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 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 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지 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 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 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 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 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배</p>	<p>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 재요령)</p> <p>① ----- ----- -----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 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 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사항 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u>별표 4</u> <u>와 별표 5</u>를 각각 적용한다.</p> <p>② ~ ③ (생 략)</p>	<p>----- ----- ----- ----- ----- -----<u>별표 4</u>와 <u>별표 1의2</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1. 개정이유

공직기강 확립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강화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비위공무원에 대하여는 3진 아웃제(해임, 파면 등 배제징계)를 도입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별표 1)
 -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별표1의2에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경우 해임, 파면의 배제징계(3진 아웃제)
 - 1회 음주운전의 경우 : 경 징 계(견책 - 감봉)
 - 2회 음주운전의 경우 : 중 징 계(정직 - 강등)
 - 3회 음주운전의 경우 : 배제징계(해임 - 파면)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2 - 258호

공 인 공 고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7






포 항 시장 박 승 호

- 1. 등록공인 사용개시일 및 폐기일 : 2012. 2. 22
- 2. 등록 및 폐기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신규 등록 및 폐기
-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1
-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2

□ 등록 공인명 및 인영(붙임1)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포 항 시 국 제 화 전 략 본 부 신 재 생 에 너 지 팀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한글전서체 1.8Cm 정방형		조직개편 따른 신규등록
포 항 시 국 제 화 전 략 본 부 신 재 생 에 너 지 팀 분 임 물 품 출 납 원 인	한글전서체 1.8Cm 정방형		조직개편 따른 신규등록

□ 폐기 공인명 및 인영(붙임2)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포 항 시 국 제 화 전 략 본 부 동 빈 내 향 복 원 팀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한글전서체 1.8Cm정방형		조직개편 따른 폐기
포 항 시 국 제 화 전 략 본 부 동 빈 내 향 복 원 팀 분 입 물 품 출 납 원 인	한글전서체 1.8Cm정방형		조직개편 따른 폐기
포 항 시 경 제 산 업 국 농 축 산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한글전서체 1.8Cm정방형		조직개편 따른 폐기
포 항 시 경 제 산 업 국 농 축 산 과 분 입 물 품 출 납 원 인	한글전서체 1.8Cm정방형		조직개편 따른 폐기
포 항 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정 수 과 분 입 자 산 출 납 원 인	한글전서체 1.8Cm정방형		조직개편 따른 폐기

포항시 공고 제 2012 - 259 호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2. 2. 17.

포항시장 박승호

1. 공 고 기 간 : 2012. 2. 18. ~ 2012. 3. 8. (20일간)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제재활용사업장 - 붙임 내역서 참조
3. 폐차 예정일 : 2012. 3. 9.부터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
6. 강제처리대상차량 : 21러5978호 외 6대 (번호미상 이륜차 1대 포함)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총건수 : 6 ◆ 공고기간 : 2012-02-18에서 2012-03-08까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성명	차명 주민번호	주소	방지장소		이해관계
				방치장소	보관장소	
2011-187	21러5978	스포티지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78 번길, 18 (해동동)	포항시 북구 학장동 국민체육센터앞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 의무보험 4, 손배법 8, 검사지연 1 ● 포항시남구 세무과 - 지방세체납 복지환경위생과 - 환경개선부담금체납 7 건설교통과 - 주정차위반 ● 포항시북구 건설교통과 - 주정차위반 2 ● 경산시 환경보호과 - 환경개선부담금체납 2 ● 수성구 교통과 - 책임보험 2, 검사경과 1 ● 환경과 - 환경개선부담금 3, 배출가스정밀검사 1 정수팀 - 지방세체납 1 ● 부산서구 교통과 - 주정차위반(47하5338) ● 경상경찰서 경비교통과 - 과태료 체납처분압류 ● 대구수성경찰서 경비교통과 - 과태료 체납(200772205024755)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 건강보험료체납 (10391657867) ● 지당 : 배주원 대구 북구 노원동2가 (2005.3.24.) ● 지당 : 김은미 포항 북구 죽도동 (2008.5.23.)
2011-188	경북29마 5230	이훈	경북 포항시 남구 중성로 67-4, 203호 (상도동)	태평양중합폐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 환경위생과 -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005318-00) ●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 의무보험과태료 4, 자동차관리법위반 1 ● 포항시남구 세무과 - 지방세(자동차)체납 1 건설교통과 - 주정차위반 8 ● 포항시북구 건설교통과 - 주정차위반 7 ●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과태료체납 9
2011-192	서울44도 9831	이상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유시 장2길 9-9 (성황동)	포항시 북구 정성동 1550-1 용인대석사합 기도앞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남구 건설교통과 - 주정차위반(2008-3635, 2010-021248) ● 서울중랑구 세무과 - 자동차세체납 1 교통행정과 - 책임보험 2, 정기검사위반(005137) 맑은환경과 - 배출가스정밀검사(2008-11-003082) ● 서울동작구 교통지도과 - 주정차위반(2004-11-102567) ● 서울중앙경찰서 경비교통과 - 도로교통법위반 등 15 ● 현안동남경찰서 경비교통과 - 도로교통법위반 3 ● 국민건강보험공단중앙지사 - 체납처분예의환압류('07.1.5) ● 지당 : LG캐피탈(주) '02.25.28. ⇒ 신한카드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총건수 : 6 ◆ 공고기간 : 2012-02-18에서 2012-03-08까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차 명 주인번호	주 소	방치장소		이해관계
	성 명	번호			방치장소	보관장소	
2012-5	35수1638	레간자		대전 대덕구 연축동 268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남부경찰서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교통과 - 주정차위반(2009018466) ● 대전 차량등록사업소 - 과태료(2008-004930, 3000000) ● 대전 대덕구 환경관리팀 -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체납 세무팀 - 지방세체납처분 ● 성남 수정구 건설과 - 불법주정차위반(77489) ⇒ 경제교통과 ● 성남 분당구 가로경관과 - 불법주정차과태료 2건 ⇒ 경제교통과 ● 성남 중원구 건설과 - 주정차위반(2006-09-101648) ⇒ 경제교통과 ● 인천시 교통행정과 - 주정차위반(200502024660, 200602045654) ● 대전 대덕경찰서 교통과 - 과태료 체납 15 ● 경기 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 체납처분 11 ● 성남 중원경찰서 경비교통과 - 도로교통법위반 8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도로영입팀 - 통행료 체납 	
2012-6	경북28나 7416 고려프렌트 (주)	포텐사오토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562-1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남부경찰서 내 동해지구종합폐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 교통행정과 - 주정차(2002-43583, 2003-17718) ⇒ 남북건설교통과 ● 차량등록사업소 - 책임보험 2, 자관법 1 ● 포항시북구 세무과 - 지방세체납 5 ●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속도위반 등 7 	
2012-8	미 상 (이륜차)	Verucci		미 상	포항시 북구 득량동 141-1 현대슈퍼 인근 공터		
	미 상				양학동주민센터		